#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57

발의연월일: 2020. 11. 18.

발 의 자: 허종식 · 배진교 · 정일영

이성만 • 어기구 • 김정호

신동근 • 유동수 • 박찬대

홍영표 • 윤관석 • 송영길

박용진 · 김교흥 · 맹성규

이용선 • 김민철 • 임호선

고영인 • 박재호 • 양기대

오영환 의원(2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청회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현행법의 공청회 규정에 기반 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실시되면서 전자공청회가 아닌 이른바 대면공청회의 실시가 요원해짐에 따라 공청회 실시 의무가 부과된 개발사업의 진척이 어려워졌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자공청회는 공청회와병행하여서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국민 참여에 대한 요구와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 전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청의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민원처리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국민참여와 관련된 원칙·방법 등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공청회의 실시로 공청회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 신설(안 제38 조의2제1항 단서 신설)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 공청회의 실시로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의 실시를 갈음할 수 있음.

- 나.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원칙 및 방법 등 규정(안 제52조, 제52조의 2, 제52조의3, 제53조의2)
  - 1)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 참여방법 사전 공표 등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청의 다양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
  - 2) 국민제안의 근거를 「민원처리법」에서「행정절차법」으로 이관하고 국민 참여 플랫폼의 설치·운영 근거를 동 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규정함.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그 밖에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공청회의 실시로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의 실시를 갈음할 수있다.

제52조의 제목 "(국민참여 확대 노력)"을 "(국민참여 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 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에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국민참여 활성화) ① 행정청은 제5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사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국민참여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진단을 통해 국민참여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은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홍보, 예산·인력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자체진단 과정과 결과를 확인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 며 행정청에 대하여 컨설팅, 교육·홍보, 포상, 예산·인력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2조의3(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청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의2(국민참여 창구) ① 행정청은 주요 정책 등에 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국민참여 창구를 연계한 국민참여 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행정청에 제52조의3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8조의2(전자공청회) ① 행정청 제38조의2(전자공청회) ① ---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 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서 신설> 다만,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공청회의 실시로 제38조에 따른 공청회 의 실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행정 제52조(국민참여 보장) ① 행정청 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은 행정에 관한 전 과정에서 국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 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 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행정청은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2조의2(국민참여 활성화) ① 행정청은 제52조제2항에 따른

<u>구체적인 참여방법을 사전에 공</u> 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국민참여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진단을 통해 국민참여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은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홍보, 예산·인력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행 정청의 자체진단 과정과 결과를 확인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 개할 수 있으며 행정청에 대하 여 컨설팅, 교육・홍보, 포상, 예 산・인력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2조의3(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청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 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 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

<신 설>

<신 설>

<u>소규칙</u>,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국민참여 창구) ① 행정은 주요 정책 등에 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국민참여 창구를 연계한 국민참여 플랫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행정청에 제52조의3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에 관한 정보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